

치유�휴직 신청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신 청 근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 및 연락처 (전화번호:) (휴대전화:)	
	특별 휴업·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 유무([]있음 []없음) ~	
치유�휴직	치유�휴직 신청기간 ~	
	* (치유�휴직 개시 예정일:) * (근무 복귀 희망일:)	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신청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(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1. 치유휴직은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“특별 휴업·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” 란에는 2024년 12월 2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지급한 특별 휴업·휴직 지원금 수급여부 및 수급기간을 적습니다.
3.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,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4. 법률 제20954호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전에 특별 휴업·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“치유휴직 신청기간” 란에는 치유휴직 기간 중 특별 휴업·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적습니다.
5.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이
이
이

(서명 또는 인)

처리기관: 사업주